

제1조(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각호외의의규정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하고, 동항 제1호중 “기획 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시정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월드컵경기장건설단 건축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설기획단 담당사무관”을 “총무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표창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시민대상조례의 개정)서울시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실장·환경관리실장·교통관리실장·행정관리국장·건설국장”을 “경영기획실장·행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으로 한다.

제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공인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중 “총무과”를 “민원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 공보관”을 “행정국장, 대변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무국장”으로, “재산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하며, 동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사용·수익”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또는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제5항제1호중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그밖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및 부과대상기간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방재교육을 수행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
 ②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2일
 2. 매주 월요일
 3.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체험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10:00부터 17:00까지